

[별표 17]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제33조제4항 관련)

1. 정밀안전진단은 다음의 진단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진단 분야	진단 항목
가.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출하설비의 운영 실태
나. 장치 분야	외관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확인, 보온·보냉 상태 확인
다.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 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2. 안전성평가는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의 방법,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